

군포시의회 공고 제 2019 - 22호

군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이회재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2 월 10 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19년 12월 15일 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 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15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allnew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군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군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(이희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9. 12. 10.

발 의 자 : 이희재, 이견행, 장경민,
성복임, 홍경호, 이길호
신금자, 김귀근, 이우천

1. 제정이유

-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~ 제3조)
- 기금의 관리·운용 및 심의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 ~ 제6조)
- 회계공무원 및 존속 기한 등 (안 제7조 ~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 제14조

군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3. 그 밖에 특별회계,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등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, 군포시장(이하“ 시장”이라 한다)은 이를 매년마다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.

1. 해당 연도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3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4.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경비
5. 대규모 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
6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

②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80%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군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의 조성 및 채원조달에 관한 사항
2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
4.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「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에 따른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제6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결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포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예산업무담당과장

2. 기금출납원 : 예산업무담당팀장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군포시 지방채 상환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기금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군포시 지방채 상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·채무 그 밖의 권리·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군포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귀속한다.